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14 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김성원・임이자・박성훈

김선교 • 고동진 • 이인선

이종배 • 박충권 • 정동만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상북도 의성, 안동, 청송,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.

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,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,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(안 제37조의2, 제3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장제1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37조의2(산불진화단 등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·시행) ① 산림청장은 산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7조의3(작업중지 조치)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불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우
 - 2. 그 밖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산불진화단 등에 대한
	<u>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·시행)</u>
	① 산림청장은 산불진화단, 산
	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
	진화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
	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대책
	<u>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	②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수립에
	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7조의3(작업중지 조치) 산림청
	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
	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불예방
	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
	시 중지하여야 한다.
	1.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가 발
	<u>령된 경우</u>
	2. 그 밖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
	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경우